

# 일본의 아동보호체계간 연계성 고찰: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sup>1)</sup>

*Networking of the Child Care System in Japan*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 왜 아동보호체계인가?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방임 등과 같은 아동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아동의 피해상황이 심각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울산의 계모의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 ‘칠곡의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구미 게임중독 부의 28개월 아동 살해’ 등은 아동사망사례이고, 인천 및 일산에서는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기아상태가 되거나 영양실조, 불결 등의 사례이다. 경제선진국 진입하고 있는 국가적 수준에 맞지 않는 일련의 아동사건인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당혹하게 한다. 더욱 사회적인 실망과 좌절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후 아동이 사망하거나 방임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려진다는 것이다. 아동문제는 조기개입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 혹은 예방이 되어야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아동이 보호되는데, 우리 현실은 아동사건과 사고에 대해 뒤늦은 발견을 하여 아동보호가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아동보호체계란 위기아동 보호, 방과후 케어, 학대예방, 위기아동 사례관리, 학대피해시 개입 등과 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달체계, 법률, 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형태의 위기아동을 발견하여 개입, 사후관리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차선책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기관은 공공과 민간으

1) 2절과 3절의 일본 동경도의 ‘아동상담소 사업개요’와 ‘아동상담소 소개 책자(児童相談所のしおり, 2012, 東京都)’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본고 내용의 일부는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2013).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시되었음.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에는 시군구 아동전담팀과 통합관리체계인 드림스타트가 있고, 민간기관에는 방과후 돌봄체계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위탁아동의 지원체계인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지 못할 때 대신 양육하거나 보호치료하는 아동생활시설, 입양관련 지원기관인 입양기관 등이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여러 민간단체들이 각종 아동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돌봄, 학대, 방임, 교육, 정서지원, 대리양육 등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아동사건·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거나 적시의 개입이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동보호 기관수의 부족, 보호기관간 연계의 부족, 종사자의 부족 및 소진 등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 아동보호 체계를 수립하여 유기적인 돌봄 및 학대조치 등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극동아시아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에 영향을 준 일본의 아동상담 관련기관의 역할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국가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 중 하나가 ‘아동가정복지’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일본에서는 1948년경 아동상담소

를 설치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아동상담소는 지역사회 위기아동의 발견, 배치,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기관이다. 그 이후에는 아동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아동보호의 최일선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중앙정부의 제도보다는 지자체의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 지자체 중 하나인 동경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경도는 인구 1,300만으로 우리나라의 서울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은 1.39로 높고(우리나라: '13년 1.19), 아동인구비율은 14.2%로 낮은 편이다.<sup>3)</sup> 동경도 사례를 통해서 지자체 단위로 할 수 있는 아동보호대책을 고찰해 보았다. 동경도의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위기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보호란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특히 방임, 학대, 가출, 비행, 왕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말하는 개념으로 하였다. 이러한 아동 및 가정의 욕구에 대응해서 어떠한 유기적인 연속선 상에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사례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적인 아동보호체계를 수립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2) 황성하(2006).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아동복지 현황 고찰, *학생생활연구*, 11, pp.79~114.

3) 일본 동경도(2012). *아동상담소 사업개요*.

## 2. 일본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일본에서 아동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최일선의 기관이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들 수 있는 곳이 복지사무소, 아동위원, 시구청촌, 보건소(보건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 보육시설, 아동클럽, 아동복지시설, 학교 및 유치원, 교육상담소, 가정재판소, 경찰서, 보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이다. 이중 체계적으로 아동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게이트 키퍼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아동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구시정촌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 ‘상담의 제1창구’이다. 센터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하는 아동상담소와 가장 밀접한 연계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면접, 전화상담, 방문상담, 아동 및 가정에 재가서비스(short stay, twilight stay, 일시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유형에는 선구(先驅)형 어린이가정지원센터, 종래(從來)형 어린이가정지원센터·소규모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종래형과 소규모형 가정지원센터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기관 등과 연계활동 등을 한다. 선구형 어린이가정지원센터는 아동 및 가정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와 더불어, 요보호아동 및 가정지원과 재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에 제시하였듯이 아동가정지원센터는 경찰·소방서, 학교·교육위원회·자치회, 아동클럽, 보육시설·유치원, 민생·아동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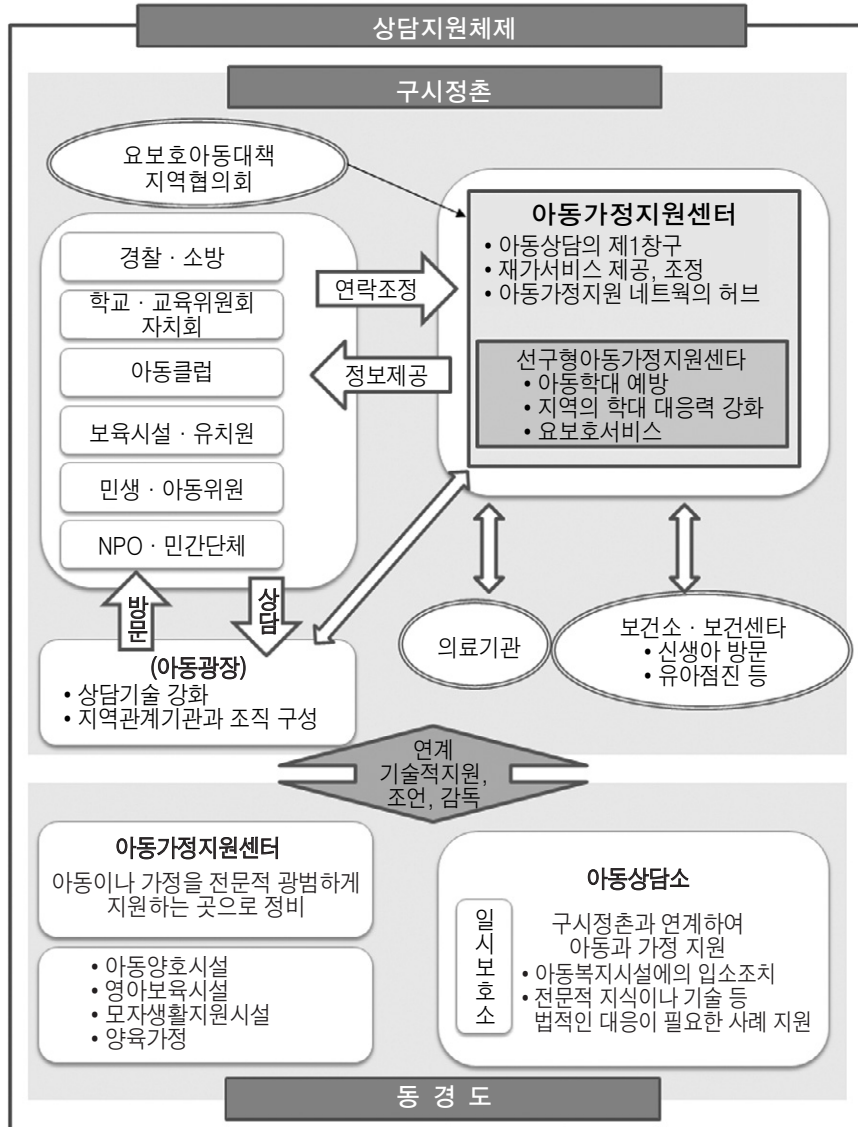
NPO·민간단체 등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한다.

아동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도 하고,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보건사·조산사·보육사 등을 파견하고, 육아지원 헬퍼 등도 파견하여 육아상담이나 간단한 가사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동학대 가정이나 아동학대로 아동상담소의 결정으로 일시보호 또는 시설조치된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경우 그 가정을 지원하는 학대아동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아동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1차적인 예방과 적절한 지원을 아동 및 가정에게 제공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아동관련 전문인력을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원활하게 아동양육을 하거나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동이 가정에 복귀된 후 학대의 재발방지 및 가정생활에의 재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에는 1차 상담창구인 아동가정지원센터를 거쳐서 다양한 실제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림 1.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 연계체계(2012년)



자료: 동경도, 아동상담소 사업개요, p.65.

의 기관과는 달리 확대 뿐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진단해 보기로 하겠다.

### 3. 일본 동경도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역할

#### 1) 아동상담소의 주요 기능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이념을 실현하는 기구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학대아동 문제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고 18세 미만 아동에 관한 광범한 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관이다.<sup>4)</sup> 이 기관의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 59조 4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상담소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에 원칙적으로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가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대도시지역에서는 10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곳도 있다. 도도부현에는 1개 ‘중앙아동상담소’를 지정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아동상담소를 지원하고 연락하고 있다. 동경도의 경우 중앙아동상담소를 포함하여 11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있다.

일본에는 2013년 4월 현재 총 207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5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17백만명으로 우리나라 10백만명보다 1.7배가 많은데 비해, 아동상담소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4배 가량 많다. 즉, 기관수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촘촘한 아동보호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표 1>에 제시하

였듯이 시정촌지원, 상담, 조사 및 진단,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정촌 지원이란 시정촌과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을 연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이란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0세부터 18세미만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담한다. 상담에는 학대와 관련된 것만을 다루지 않고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조사와 진단’이란 이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심리검사, 의료검진, 행동진단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상담소에서는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를 제공하며, 긴급보호와 행동관찰을 한다. ‘긴급보호’는 기아, 가출, 학대 등의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고, ‘행동관찰’은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받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시설입소가 어렵지만 장시간의 심리치료, 상담,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 2) 상담의 유형

아동상담소의 주요 기능으로 제공하는 상담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광범위하다. <표 2>에 제시하였듯이, 상담에는 학대(양호)상담, 장애관련 상담, 비행상담, 가정위탁관련 상담, 양육상담 등이 있다. 학대상담이

4) 황성하(2006). 앞의 책.

**표 1. 일본 아동상담소의 주요 기능**

업무	내용			
시정촌 지원	시정촌과 상호간에 연락조정하고, 시정촌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의 연수, 기타 필요한 지원			
상담	아동 및 가정을 상담하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룸. 원칙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담			
조사, 진단	아동 및 가정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필요한 조사 등)하고, 심리검사, 의료검진, 행동진단 실시.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아동, 보호자, 관계자 등에 대해 지도, 조치 등 제공.			
일시보호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경찰서, 아동복지시설 등에 임시보호 실시			
	<table border="1"> <tr> <td>긴급 보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가출아동 등 적당한 보호자나 거주지가 없는 긴급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 등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의 출산, 병,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li> <li>• 아동이 사고 등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경우 등</li> <li>• 기타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ul> </td> </tr> <tr> <td>행동 관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보호에 따른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받는 아동의 행동(대인관계, 학습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장시간의 심리치료, 상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지리적 조건은 맞지만, 아동의 성격, 환경 등의 조건에 의해서 시설입소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td> </tr> </table>	긴급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가출아동 등 적당한 보호자나 거주지가 없는 긴급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 등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의 출산, 병,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li> <li>• 아동이 사고 등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경우 등</li> <li>• 기타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ul>	행동 관찰
긴급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 가출아동 등 적당한 보호자나 거주지가 없는 긴급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 등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보호자의 출산, 병,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경우</li> <li>• 아동이 사고 등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는 경우 등</li> <li>• 기타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ul>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보호에 따른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받는 아동의 행동(대인관계, 학습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 장시간의 심리치료, 상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지리적 조건은 맞지만, 아동의 성격, 환경 등의 조건에 의해서 시설입소 등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상담담당자	원칙적으로 상담은 지역담당 아동복지사가 담당.(오전 9시~오후 5시)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발생한 학대 등 긴급한 상담은 아동상담센터가 담당			

자료: 동경도아동상담소(2013). (평성 25년), 사업개요 (아동상담소). p.12~13.

란 학대상담, 양육곤란(보호자의 가출, 실종, 사망, 이혼, 입원, 취로 및 복역 등), 미아상담, 양육가정(가정위탁) 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보건상담이란 일반적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유아, 조산아, 허약아, 아동의 질병, 사고 부상 등) 등을 하는 것이다. 신체장애상담에는 시청각 장애상담, 언어발달 장애상담, 지체부자유 상담 등이 있다. 지적장애 상담에는 중증심신 장애상담, 지적장애상담, 말늦음 상담 등이 있고, 발달장애상담으로 자폐증, 주의결핍상담, 학습장애 상담 등을 한다. 아울러 비행상담이란 우범행위상

담, 위법행위상담을 하는 것이고, 학업과 관련된 육성상담으로 부등교 상담, 성격행동상담, 예의범절상담, 적성상담, 언어지체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시설 관련 조치변경과 재소기간연장에 대한 상담이 있다.

상담은 아동복지사(사회복지사), 아동심리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이 담당한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고, 상담자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심각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서 아동으로부터 무료전화를 통해서 다루기도 한다. 이때에는 아동권리옹호전문

표 2. 일본 아동상담소의 상담의 유형 및 내용

상담 유형	주요 내용	
학대상담 (養護상담)	학대상담, 양육곤란(보호자의 가출, 실종, 사망, 이혼, 입원, 취로 및 복역 등), 미아상담. 양육가정(가정위탁) 상담	
보건상담	일반적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 (유아, 조산아, 허약아, 아동의 질병, 사고 부상 등)	
신체장애 상담	시청각장애상담	맹인(약시 포함), 농아(난청 포함), 등 시청각장애등을 갖고 있는 아동에 관한 상담
	언어발달장애상담	(입술 혀 구개나 뇌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말을 정확 명료하게 발음할 수 없는 상태) 말더듬 이, 실어 등 음성이나 말의 기능적 장애 아동, 언어발달지체, 주의결핍장애 아동 상담.
	지체부자유상담	구음장애, 지체부자유아, 운동발달이 늦음에 관한 상담
지적장애 상담	중증심신장애상담	중도의 지적장애와 중도의지체부자유가 중복인 아동(사람) 상담.
	지적장애상담	지적장애아에 관한 상담.
	말늦음상담(지적늦음)	말이 늦은 것이 주된 증상의 상담으로 지적으로 늦은 아동 상담
발달장애상담	자폐증, 아스팔가- ADHD(주의결핍/다동성장애), 학습장애 등 아동 상담.	
비행상담	우범행위 등 상담	거짓말, 돈을 갖고 나감, 낭비벽, 부랑, 폭력, 성적일탈 등의 우범행위. 문제행동이 있는 아 동, 경찰서로부터 우범소년으로서 통고가 있던 아동 등에 관한 상담
	촉법행위 등 상담	촉법행위(14세미만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고 경찰서로부터 송치되었던 아 동, 범죄소년으로 가정재판소로부터 송치되었던 아동 상담.
육성상담	부(不)등교상담	학교, 유아원, 보육소에 등교(원)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아동에 관한 상담
	성격행동상담	친구와 놀지 않음, 침착성이 없음, 내성적, 침묵, 가정내 폭력, 생활습관의 일탈 등 성격 또 는 행동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관한 상담.
	예의범절상담	가정내에서의 유아의 예의범절, 놀이 등에 관한 상담.
	적성상담	학업부진, 진학, 취직 등의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
	언어지체상담 (가정환경)	말이 늦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상담으로 가정환경 등 언어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고 생각되는 아동에 관한 상담
그 외의 상담	(시설입소)조치변경, 재소기간연장에 관한 상담 등	

자료: 東京都(2012). 児童相談所のしおり,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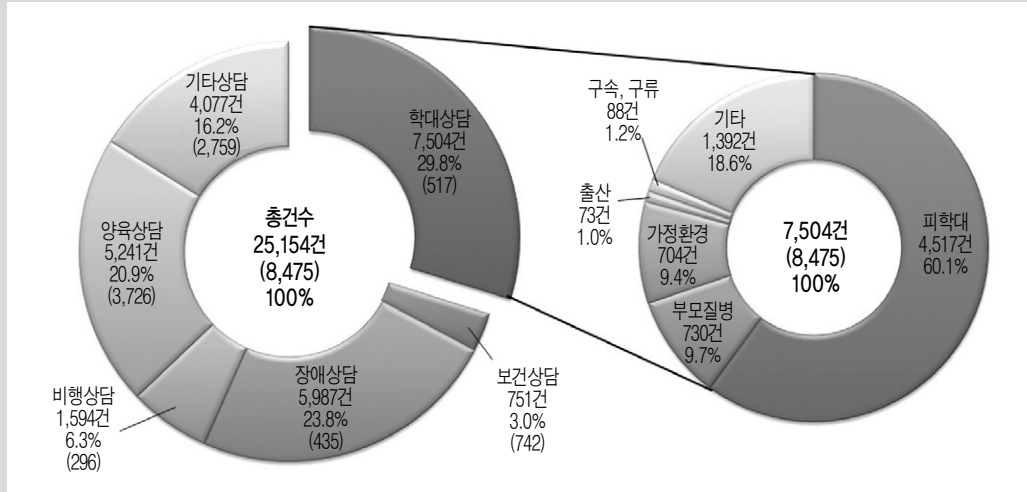
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의 조  
종을 하게 된다. 업무시간외에도 아동들이 메시  
지를 녹음하여 24시간 내내 학대 및 위기상태에  
대한 제보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상담처리 현황

2012년 동경도의 아동상담 처리상황을 보면

총 25,154건 중 학대(양호)상담이 가장 많은  
29.8%이고, 그 다음은 장애상담으로 23.8%이  
다(그림 2 참조). 아동육성 상담도 20.9%나 되  
어 적지 않고, 기타 상담 16.2%, 비행상담 6.3%  
등이다. 학대(양호)상담 중에서는 피학대 상담  
이 가장 많은 60.1%이고, 그 다음은 부모의 질  
병 9.7%, 가정환경 상담 9.4%, 구속 및 구류  
1.2%, 출산 1.0% 등이다.

그림 2. 동경도 아동상담소 상담별 처리 상황(2012년)



자료: 東京都(2012). 児童相談所のしおり, p.9.

#### 4) 아동상담소의 지역사회 연계

아동상담소는 지역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2가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아동상담소는 학대받은 아동, 비행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정보교환이나 지원내용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구성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도쿄도와 구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설치하고 있는데, 아동상담소는 지역협의회의 구성기관 중의 하나로서 관계기관들과 연계·협력을 하고 있

다. 지역협의회는 학대받은 아동, 비행아동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들의 적절한 보호를 논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결정을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넓은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참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다.

##### (2) 지구연락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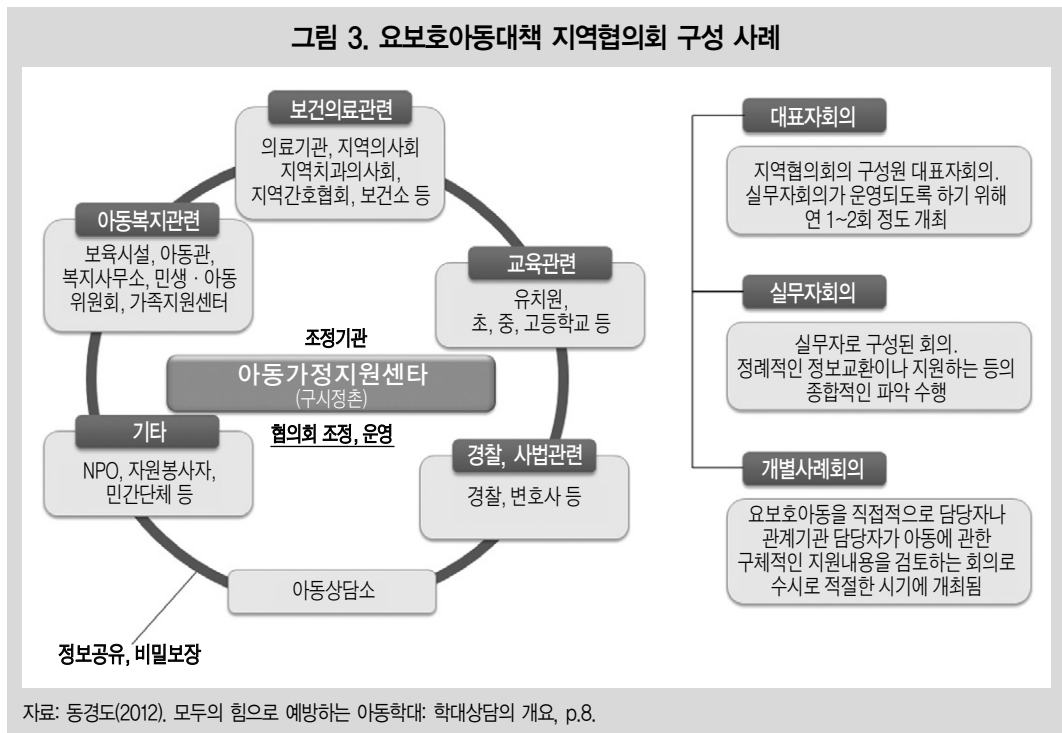
지구연락협의회는 구시정촌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주임아동위원, 학교, 어린이 가정지원센터, 아동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아동문제에 관해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의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보다는 소규모로 주로 정보교환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각종 아동심의위원회나 아동복지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높게 보고 있는 바,<sup>5)</sup> 이러한 기구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이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례제정 움직임에 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협조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역협의회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기관간의 협조체계 사례를 종합하여 동경도의 요보호아동대책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사례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조정기관으로 아동보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는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아동복지기관, 기타 민간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아동상담소와 연결되어 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개별사례회의 등을 하고 있다. 대표자 회의는 지역협의회 구성원 대표자 회의로 연 1~2회 정도 개최한다. 실무자



5)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2013).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는 정례적인 정보교환이나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개별사례회의는 요보호아동 사례별로 담당자가 모여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이다.

## 4.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의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 사례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아동사업에서 기관간 연계실태를 살펴보았다. 일선 기관인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아동보호의 제1창구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과 학대아동 사후관리를 통해서 학대의 예방과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온전한 회복과 가정의 지원을 공고화하고 있다. 아동가정센터로부터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례를 이관 받거나 아동 및 가정의 직접 접촉을 받는 아동상담소는 자체 상담 사업을 할 뿐 아니라, 상담 및 학대사례 판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아동상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학대관련 문제 뿐 아니라, 장애, 학습문제, 비행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인력으로 아동학대 및 기타 양육관련 전문가를 두어 효과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보호계

획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정례화되고 다양한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달체계 문제이다. 아동보호체계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대상 아동 발굴 및 배치상의 문제로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한 사람이 아동의 배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장애여부 판정 및 심리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sup>6)</sup> 또한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현재의 체제 내에서는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부족하고, 기관간 연계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의 미흡, 아동관련 전문인력 부족, 종사자 1인당 사례수의 과다,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열악성, 연계를 위한 정보공유체제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sup>7)</sup>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연계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히 제1창구의 기능을 하는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방임, 아동학대, 아동대상 성폭력 및 성희롱 등과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6)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2013). 앞의 책

7)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2013). 위의 책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개입이 어려워서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초기에 발견,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상황을 신고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신고가 되면 그 이후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접수 후에는 사례를 전문적으로 판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되어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에 대한 개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하기는 공공기관이 드림스타트가 제1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전문 확대에 대한 개입은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둘째, 아동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 부족한 기관으로 인해서 사각지대 아동의 발견과 개입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종사자의 확충이 필요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복지기관 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사자의 이직, 소진 등이 예방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에서처럼 복지의 허브는 공공이 역할을 맡아야 책임성이 제고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공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판정과 개입이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관을 아우르는 협의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개입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